해양부담금체계의 한·중 비교연구와 시사점

장정인*†
* 한국해양수산개발원

An Analysis on Marine Environmental Levy System of Korea and China

Jeong-In, Chang*†
* Korea Maritime Institute

핵심용어 :생태계보전협력금, 중국 생태계보상체계, 부담금
Key Words : Marine Environmental Levy, China, Marine Ecocompensation

연구배경 및 필요성

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이용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부담금으로는 '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,' '해양환경개선부담금'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, 지속적인 이용행위에 대한 관련 사용료제도로, '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'제도가 시행 중. 이러한 해양부담금 및 사용료체계는 대상해역의 가치나 이용영향의 반영이 미흡하여 산정체계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

연구목적

본 연구에서는 해역사용료제도 및 해양생태계보상체계등을 도입하여 적용해오고 있는 중국의 추진사례를 살펴봄으로써,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

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(한국)

• 부과 및 징수기관
- 주관기관 :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
- 부과 및 징수 기관 : 각 시·도 해양수산과 등

• 부과목적
- **해양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**
- **오염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훼손된 면적 만큼의 비용을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·징수함으로써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에 사용**

• 부과근거
-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, 제51조 : 부과대상, 상한액, 납입처, 산정방식 #상한액 폐지, #납입처 : 수산발전기금

• 부과대상
- 「환경영향평가법」제22조의 규정에 의한 **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**
- 「광업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**광업 중 10만㎡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**
- 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85조에 따른 **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50만㎡ 이상의 바다골재채취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 채취 단지의 지정**
- **납부의무자 : 개발사업자**

산정기준

단위면적당 부과기준	지역계수	산정 방법
250원/훼손면적(㎡)	항만구역 2 항만구역 외 4	부과금액 = 단위면적당 부과기준 × 지역계수

▪ 중국의 생태보상제(eco-compensation)개념

: 기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(PES,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)의 개념과는 상이

▪ 중국의 생태계보상제는 환경보호비용이나 개발의 기회비용에 기반한 정부 보조금 지급, 직접적 부담금 지불, 정부 내부의 기금 전환 등을 포괄하는 개념

▪ 생태계보전사업 및 이용·개발 사업에 적용될 때, 각각 생태보전보상과 생태피해보상으로 구분
▪ 국가차원, 연안을 포함하는 성, 시 등의 3단계로 추진

해양생태계보상제 적용 대상

적용 대상	제외 대상
- 법적으로 허가된 해양개발 행위 - 해양 보호 구역 지정 및 보전 -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	- 유류 유출사고 - 화학 물질 유출 - 기타 해양 사고 - 불법적 해양개발 행위

시사점

- 중국은 해양생태계보상체계 개념을 수립한지는 약 10여년이 지났지만, 아직 구체적인 법체계 및 부담금체계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

- 합법적인 개발행위나, 보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, 성, 도시 차원에서 자율적인 지침을 작성하여 개별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운영해오고 있어 단일 부담금체계에 비해 경직성이 덜하고,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,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협상과정 등을 거치도록 함

-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부담금 징수체계는 중국의 해역사용료제도나 우리나라의 관련 부담금 및 사용료와 같은 (1)단일 산정체계와 중국해양생태계보상체계와 같은 피해비용산정을 통한 (2)개별적 징수체계 로 구분되며, 제도 적용의 적합성은 부담금의 부과범위와 목적에 따라 판단

* First Author : jeongin@kmi.re.kr, 051-797-4717
† Corresponding Author : jeongin@kmi.re.kr, 051-797-4717